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적의 침투·도발행위 등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포함 등〉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63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44호)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67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개요 1

【유동수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민형배의원안】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정을호의원안】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검토의견 6

가. 사회재난 유형에 적의 침투·도발행위로 인한 피해 등 추가 6

나.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특별복구비 근거마련 ... 11

I. 개 요

【유동수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동수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9.
3. 회부연월일 : 2024. 6.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민형배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5.
3. 회부연월일 : 2024. 6.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정을호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6.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유동수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이고(안 제3조제1호나목),

민형배의원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려는 것이며(안 제3조제1호나목),

정을호의원안은 사회재난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 신설).

2. 검토의견

가. 사회재난 유형에 적의 침투·도발행위로 인한 피해 등 추가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 등을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유동수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을호의원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제3조(정의) ----- ----- -----.	제3조(정의) -----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	1. ----- ----- ----- -----	1. ----- ----- ----- -----	1.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illegible]

현행	유동수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정을호의원안
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 주물체의 추 락·충돌 등 으로 인한 피해	----- ----- ----- ----- ----- ----- ----충돌, 「민방위기 본법」에 따 른 민방위사 태 또는 「통합방위 법」에 따른 도발·위협 등으로----- -----	----- ----- ----- ----- ----- ----- ----충돌, 「통합방위 법」에 따른 침투·도발 이나 위협 등으로----- ----- --	----- ----- ----- ----- ----- ----- ----충돌,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 등으로----- ---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2. ~ 13. (현행과 같음)	2. ~ 13. (현행과 같음)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하여 차량, 건물 및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물풍선 살포는 현행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유동수의원안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서 이미 민방위사태의 피해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방위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²⁾, 이와 별도로 민방위사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개정안은 각각 ①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유동수의원안) ②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한 피해(민형배의원안) ③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에 따른 피해(정을호의원안)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투”, “도발”, “위협”의 정의³⁾가 ‘적의 침해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2) 「민방위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2.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3)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적(북한)의 도발·위협’ 등에 관한 사항은 “안보” 분야로 분류하여 법령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안보” 분야 법률인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4일 모경종위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나. 북한의 도발·위협 피해시 특별복구비 근거 마련(정을호의원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①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②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③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정을호의원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주민에 대해 특별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발생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와 같이 북한의 도발·위협 등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북한은 2024.5.28.~2024.8.11.에 걸쳐 11차례, 약 3,840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하였으며, 8월 26일 기준 피해를 지원한 금액은 서울시 약 4,500만원, 경기도 1,300만원으로 총 5,800만원 정도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간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현행	정을호의원안
<신설>	제65조의3(특별복구비 등 지원 특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 중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복구비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재난의 구호·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체제와 별도로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인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복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른 재난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상기준 >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 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사.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다음의 지원. 다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1)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2)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나. 농업·어업·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 가. 공공시설의 복구
 -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 마. 파손된 주택의 철거
 - 바.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한편, 행정안전부는 적의 도발·위협 등은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